

발송번호: 9-5-2014-048124640
발송일자: 2014.07.15.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41 현죽빌
딩 4층(한미르특허법률사무소)
서교준

135-080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특허결정서



출원인 성명 광주과학기술원 (출원인코드: 319980993815)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대리인 성명 서교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41 현죽빌딩
4층(한미르특허법률사무소)

발명자 성명 이흥노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61(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부

발명자 성명 박상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61(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정보기전공학부

발명자 성명 제임스올리버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61(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공학부

발명자 성명 이용비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61(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정보기전공학부

출원번호 호 10-2012-0079171

발명명의 명칭 분광계의 광 신호 처리 방법 및 그 장치

청구항 수 9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끝.

[참고문헌]

1. US7065473 B2
2. KR1020120057326 A
3. KR1020100063112 A
4. KR101078135 B1


2014.07.15.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정보기술융합심사과

심사관 심송학

심송학 

<< 안내 >>

【 등록료 납부, 등록공보 확인, FD 및 특허기술상신청 안내 】

1. 등록료 납부안내

- o 특허료 납부예정금액(1~3년차분) : 396,000 원(1~3년차분을 정상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 198,000 원(50% 감면대상자인 경우), 118,800 원(70% 감면대상자인 경우)
- o 특허료의 정상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납부기간 중 특허료의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위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o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첨부파일(특허료 납부 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FD출원 후 특허결정의 등본을 받기 전에 보정을 한 자는 특허료납부서 제출시까지 보정내용의 전부가 반영된 최종본의 FD 1통을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내국인은 매년 3월, 9월경 특허기술상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jsp/kiponet/mp/patentprize/index.htm>)에 공지된 신청기간에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고 아래 각 부문의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고안)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언론홍보, 창업캠프 또는 창업사관학교 입학 우대, 발명장려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및 수상마크 제공을 통해 수상된 발명(고안)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 o 세종대왕상 등 부문: 권리 또는 실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의 발명(고안)
- o 홍대용상 부문: 개인 또는 소기업의 출원으로서 권리 또는 실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의 발명(고안)
- ※ 상기요건 모두 충족시 두 부문에 중복 신청 가능

※ 등록공보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7일 전후로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마당→인터넷공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서의 내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특허청 ☎ 042-481-5778(담당심사관 심송학)로, 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등록)료 · 수수료 · 등록세 · 인지세 납부안내서(영수증)

1. 납부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출원번호, 등록료, 총금액 등이 정확히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2. 면제 또는 감면대상자, 청구항 축소, 상품류 축소 등에 따라 정상 특허(등록)료에 변동이 있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확인하신 후에 특허(등록)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3. 요금의 종류
 - (1) 특허료 · 등록료
 - (2) 수수료: ①출원료 ②심사청구료 ③심판청구료 ④국제출원수수료 ⑤보정료 ⑥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등록료 ⑦기타
 - (3)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 특허권 등의 권리이전 및 상표권의 설정 및 갱신 등록에 한함
 - 상표권 설정 9,120원(등록세: 7,600원, 지방교육세: 1,520원), 상속에 의한 권리이전 14,400원(등록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 상속 이외의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 21,600원(등록세: 18,000원, 지방교육세: 3,600원)
 - (4)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
 4. 이 고지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특허청 본청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요금은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그 밖의 문의사항은 특허청 특허고객 상담센터 (☎1544 - 8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면제 또는 감면은 발명자와 출원인, 등록권리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납부금액이 '₩0원' 인 경우에는 은행에 제출하지 마시고, 반드시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On-Line(특허로)이나 서면(우편, 직접방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 설정등록료는 고객님의 입금전용계좌를 통해 CD기/ATM기 또는 온라인으로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전용계좌: 농협은행 790-0594-0839-876 (아래 고지 금액에 한하여 입금 가능하며, 타행 이체 시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납부자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좌번호	1 2 7 9 9 6 - 6		
납부자번호	0131-9-5-2014-0481246-40		
출원·등록·심판번호	10-2012-0079171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396,000원		
등록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인지세	₩0원		
총금액	₩396,000원		
정상납부기일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 금액기재 앞 란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납부자성명	서교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41 현죽빌딩 4층(한미르특허법률사무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습니다.

면제/감면사유	
없음	



한국은행취급점
영수증인

징수결정전 납입 납부서 (수납은행용 또는 한국은행용)

세입징수관서	특 허 청		
계좌번호	1 2 7 9 9 6 - 6		
납부자번호	0131-9-5-2014-0481246-40		
출원·등록·심판번호	10-2012-0079171		
특허(등록)료 및 수수료	₩396,000원		
등록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인지세	₩0원		
총금액	₩396,000원		
정상납부기일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		

* 금액기재 앞 란에 ₩ 표기 후 금액을 기재함.

위와 같이 수납 의뢰하오니 영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취급점
영수증인

* 수납기관에서는 굵은 선 안의 내용을 반드시 전산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등록)료 납부 안내>>

1. 설정등록료(1~3년차분) 및 연차등록료

권리구분		설정등록료 (1~3년차)	연차등록료				
			4~6년차	7~9년차	10~12년차	13~15년차	16~20년차
특허	기본료	15,000원씩 45,000원/년	40,000원/년	100,000원/년	240,000원/년	매년 360,000원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	13,000원씩 39,000원/년	22,000원/년	38,000원/년	55,000원/년	매년 55,000원	
실용신안	기본료	12,000원씩 36,000원/년	25,000원/년	60,000원/년	160,000원/년	240,000원/년	
	가산료(청구범위 1항마다)	4,000원씩 12,000원/년	9,000원/년	14,000원/년	20,000원/년	20,000원/년	
디자인	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35,000원/년	70,000원/년	140,000원/년	210,000원/년	
	일부심사	매년 1디자인마다 25,000원씩 75,000원	34,000원/년			(4~20년차)	

*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총납부금액의 5% 할인

- 납부기간 :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료는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4년분 이후의 연차등록료는 설정등록일을 기준으로 매년 당해연도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 설정등록일이 2014.2.4.인 경우 2017.2.4.까지 4년차 등록료를 납부) 그리고 정상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6개월 이내(추가납부기간)에 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월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설정등록료에 대한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출원포기로 간주되어 등록받을 수 없으며, 연차등록료에 대한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권리는 소멸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①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을 이용하는 방법 : 등록결정서와 함께 송달받은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상의 정상납부일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 지로사이트 (<http://giro.or.kr>)에서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납부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② 「납부서」(특허권등의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를 이용하는 방법 :
 - ㉠ 「납부서」를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특허청(서울사무소 등)에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제출일의 다음날까지 은행, 우체국 등 국고수납기관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http://giro.or.kr>)에서 특허료를 납부합니다. (단, 금융기관영업시간 이후에 납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
 - ㉡ 「납부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납부서」를 작성한 후 등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상환증서로 바꾸어 「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보내야 합니다.

* 보낼 곳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등록과
- 등록료 면제 및 일부청구항(일부디자인)을 포기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학생, 중소기업 등이 등록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와 함께 감면 또는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설정등록료 납부시 일부 청구항(일부디자인)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서」와 함께 「포기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한 후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납부서

- 【납부구분】 설정 특허·등록료 연차 특허·등록료
- 존속기간갱신 등록료 존속기간갱신분할 등록료
-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 등록료 특허·등록료 보전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소】

【전화번호】

【납부대상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번호, 등록번호)】

【청구항(디자인, 상품류, 서비스류)수】

(【포기대상】)

(【납부연차】)

(【감면사유】)

【특허(등록)료】

【특허(등록)료】

(【등록세】)

【합계】

(【제출원인이 된 서류의 접수번호】)

(【회복신청】

【회복신청 원인】 실시중인 특허발명(등록고안, 등록디자인)의 특허(등록)권 회복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멸된 특허(등록)출원 및 특허(등록)권 회복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방문수령(대전) 방문수령(서울) 우편수령 방문수령(대전 송달함) 방문수령(서울 송달함)

(【특허(등록)증 수령인】)

(【성명】)

(【주소 및 우편번호】)

【특허(등록)료·수수료 및 등록세 납부사항정정신청】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납부자

(인)

【첨부서류】 법령에서 정한 서류 각 1통 (기재요령 제9호 참조)

210mm× 297mm(보존용지(1)종 70g/m²)

【특허청의 특허기술 활용 지원 정책 안내】

o 특허청은 내국인(개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기술 활용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3차원(3D)설계 제작지원

- 우수 특허기술의 초기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3차원 설계 제작에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3~4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작비용의 70%(본인부담금 30%이내), 20백만원 한도

나. 특허기술의 평가 비용지원

- 발명의 평가기관으로부터 특허기술의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받거나,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 평가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1~2월(일반평가), 연중(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평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평가비용의 70%(본인부담금 30%이내), 50백만원 한도

다. 특허기술 거래지원

- 특허기술거래 전문가로부터 특허기술의 거래를 위한 중개알선 및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라.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지원

- 특허청과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가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특허, 브랜드, 디자인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2~3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특허청의 특허기술 활용 지원정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	042) 481-5169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042) 481-8452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02) 3459-2932
한국발명진흥회 특허평가거래팀	02) 3459-2881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팀	02) 3459-2824